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86 발의연월일: 2022. 6. 13.

발 의 자 : 윤주경 • 박수영 • 신원식

윤창현 • 이종배 • 임병헌

정운천 • 추경호 • 태영호

허은아 · 홍문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수검 후 보훈심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있으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5 곳에 불과하고 신체검사 담당 의사도 부족하여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의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이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 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 함(안 제6조의3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⑦ (생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⑦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으로 실
	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